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2 ~ 4. 5.)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를 제84조의2로 하고,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체육·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장)에게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124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기타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124조의3제3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0호의3서식의 연기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취소 신청서를 제

출해야 한다.

별지 제10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입영 등 연기추천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구 분	[] 체육 분야 우수자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병역사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기타 ()		
징집·소집 연기	연기기간 : 년 월 일까지		
	연기사유 :		
	체육 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활동사항 :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 등 연기대상에 해당되어 징·소집을 연기하고자 하오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대표 확인서 (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 (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3. 상훈 수여 확인서 (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4. 기타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 따라 체육 분야 우수자는 27세,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30세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2.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 따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추천 여부 결정]
    B --> C[연기 여부 결정]
    C --> D[통지]
  
```

신청인 대한체육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병무청장

입영 등 연기 추천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구 분	[] 체육분야 우수자 []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사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에 따라 위 병역의무자의 입영등 연기를 추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장

직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03호의3서식의 입영 등 연기 추천신청서 및 첨부서류
------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4조(체육·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영 등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장)에게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124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u>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u>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u>4. 기타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u>

<u>제84조</u> (생략)	는 서류 ③ 영 제124조의3제3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0호의3서식의 연기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u>제84조의2</u> (현행 제84조와 같음)
-------------------------	---